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록

- ▣ 일 시 : 2015. 10. 12.(월) 13:00~
-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 ▣ 출석위원 : 백영흠(위원장), 석대권, 정명섭, 홍형순,
김봉렬, 남해경, 김왕직, 이승우(이상 8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안동 하회마을 내 원두막 설치	
2	안동 하회마을 내 가옥 개축	
3	안동 하회마을 내 하천 정비	
4	경주 양동마을 내 대성헌 주변 정비	
5	경주 양동마을 내 와가 신축	
6	영주 무섬마을 내 만족재 주변 석축 정비 허가사항 변경	
7	영주 무섬마을 내 제방 안전난간 설치	
8	영주 무섬마을 내 제방 호안 설치	
9	영주 무섬마을 내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 설치	
10	성읍 민속마을 내 캠핑트레일러 설치	
11	영덕 난고종택 내부와 주변에 LPG 배관망 및 저장탱크 설치	
12	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 주변 단독주택 신축	
13	안동 하회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14	안동 하회마을 주변 단독주택 및 소매점신축(○○○)	
15	안동 하회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16	안동 하회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17	영주 무섬마을 주변 농로포장 및 배수로 공사	
18	영주 무섬마을 주변 소매점 신축을 위한 부지조정	
19	아산 외암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20	아산 외암마을 주변 지하수 관정 개발	
21	여주 김영구가옥 주변 주유소 신축 허가사항 변경	
22	화성 정용채가옥 주변 공장증축	
23	대구 둔산동 경주최씨종택 주변 수목정비	
24	제원 박도수가옥 주변 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25	제원 박도수가옥 주변 축사 신축	
26	보은 선병국가옥 주변 군부대 내 식당신축	
27	홍성 엄찬고택 주변 버섯재배사 신축	
28	송소고택 주변 옹벽설치	
29	의성김씨 서지재사 주변 도로선형 개량공사	
30	가일수곡고택 및 안동 권성백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개정	
31	안동 학암고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개정	

【검토사항】

32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개정	
33	지역 거점 문화재 활용 활성화 방안 및 향후계획	

【보고사항】

34	민속분과 제1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	---------------------	--

심 의 사 항

1. 안동 하회마을 내 원두막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풍천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내 원두막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내 원두막 설치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사)안동하회마을보존회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829(하회마을 마을회관 내)
- (4) 신청내용 : 가로 3.0m, 세로2.0m, 높이3.0m의 원두막 설치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5.10.2.)

- 마을회관 내에 원두막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형태도 전통마을과 부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사료됨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마을회관 내에 원두막 설치는 문화재 보존에 부적정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전통마을과 조화를 이루지 않음

2. 안동 하회마을 내 가옥 개축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풍천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내 가옥을 개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내 가옥 개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662
- (4) 신청내용 : 하회마을 662 내 가옥 개축

순번	기 존				변 경			
	건물명	면적(㎡)	구 조	구분	건물명	면적(㎡)	구 조	구분
1	안 채	49.70	한식목구조	철거	안 채	50.31	한식목구조	개축
2	창 고	5.46	샌드위치 판넬	철거	화장실	2.25	황토벽돌	기존
3	샤워실	16.71	샌드위치 판넬	철거				
4	화장실	2.25	황토벽돌	존치				
계	4동	74.12			2동	52.56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5.10.2.)

- 항공사진(1971년)과 가옥사진(1979년)으로 보아 ㄱ자형 집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기존의 가옥 내에 생활기본시설(설기치준령에 의거)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마. 검토의견

- 불량한 부분을 철거하고 초가를 개축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가옥 터 부족으로 ㄱ자형으로 개축하는 것에 대한 위원회 검토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 부결
 - 평면을 “ㄱ”자형 으로 변경 개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3. 안동 하회마을 내 하천 정비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풍천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내 하천을 정비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내 하천 정비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안동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1리
- (4) 신청내용 : 생태옹벽구조물 설치
 - 옹벽블럭(H=1.32m, L=47.0m) 설치(블럭 1개 1000mm×330mm×500mm)
 - 세굴방지콘크리트 설치(A=1.5, B=1.0, T=0.3m / 3개소)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5.10.2.)

- 하천 정비를 하되, 옹벽블럭은 규격을 축소하고 친환경적인 형태로 함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하천 정비는 필요하나, 옹벽블럭의 규격과 형태는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함

4. 경주 양동마을 내 대성헌 주변 정비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강동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내 대성헌 주변을 정비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내 대성헌(경북 민속자료 34호) 주변 정비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84
- (4) 신청내용 : 대성헌 주변 자연석 석축 및 배수로 설치, 사면 정비 등
 - 자연석 석축(L=92.5m, H=0.3~1.4m) 설치
 - 자연석 배수로(L=92.5m, H=0.15m) 설치
 - 사면정비[성토(460.0m²), 절토(50.0m²)] 등

라. 검토의견

- 경주 양동마을 내 대성헌(경북 민속자료 34호) 주변 사면을 정비하고 석축 및 배수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5. 경주 양동마을 내 와가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강동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내 와가를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내 와가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안건은 2014년 8월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되었으나, 문화재의 원형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고 고증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불허통지되었고, 신청인이 일제강점기 부동산등기부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안길 63-4
- (4) 신청내용 : 가옥 2채 신축 및 주변정비
 - 안채 및 아랫채 신축(각 동 연면적 69.2㎡, 높이 5.8m, 팔작지붕, 5량가)
 - 주변정비[자연석 석축 · 토석 담장 · 옹벽 · 자연석계단 설치, 사면정비 등]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조사 / 2014.7.25.)

- 신청 예정지는 무침당 바로 앞쪽 마을길과 접한 우측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대나무 숲으로 우거져 있음
- 옛 집터라고 하나 충분하고 직접적인 고증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마을을 대표하는 주요한 주택 중 하나인 무침당의 전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현재 경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주 양동마을 종합정비계획 보완용역” 완료 후 재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보류
 - 경주 양동마을 종합정비계획 보완용역 완료 후 재심의

6. 영주 무섬마을 내 만족재 주변 석축 정비(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문수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내 「만족재」 주변 석축정비를 위한 허가사항변경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내 「만족재」 주변 석축정비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영주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 (3) 신청위치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229-2(지정구역 내)
- (4) 신청내용

구분 항목	당초 허가 사항 (2014년 5차 민속분과)	1차 변경 허가 사항 (2015년 1차 민속분과)	2차 변경 신청 사항 (2015년 7차 민속분과)	비고
석축정비 (기존 견치석 석축을 자연석 석축으로 정비)	서당 우측 구간 정비 (H=1.2m, L=11.0m)	서당 우측 구간 정비 (H=1.2m, L=11.0m) 서당 전면 구간 정비 (H=0.9~1.8m, L=22.0m)	서당 우측 구간 정비 (H=1.2m, L=11.0m) 서당 후면 구간 정비 (H=0.9~1.2m, L=34.1m)	변경없음 정비구간 변경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5.9.21.)

- 서당 배면의 변형된 견치석 석축을 자연석 석축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서당 전면 석축이 인근 가옥 경계에 위치하여 소유자간 분쟁으로 정비가 어려운 상황으로, 배면의 견치석 석축을 전통 자연석 석축으로 정비하는 것은 좋을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가결

7. 영주 무섬마을 내 제방 안전난간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문수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내 제방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내 제방에 안전난간 설치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안건은 2015년 8월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되었으나, 마을 경관, 현지 여건 등에 대한 현지조사 후 재심의하기로 보류되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영주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 (4) 신청내용 : 방부목 난간 60m 설치(1경간 H=1.0m, W=1.5m / 40경간)

라.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 / 2015.9.21
 - 한시적인 사용, 마을 경관, 안전사고 예방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검토 필요
- 문화재위원 ○○○ / 2015.10.2.
 - 총 연장 길이가 60m나 되어 시각적 영향이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간 현지 여건을 잘 모르는 내방객들의 주차 시 안전사고가 수차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설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됨
 - 추후 마을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주차장이 확보될 때 까지 임시적인 시설로 사용할 것이며 장차 철거하여 다른 곳에 재활용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조건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재전문위원 ○○○ / 2015.10.2.

- 동 지역은 안전시설이 없어 주차 중이던 차량이 추락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던 지역으로 이 공간을 주차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안전시설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계획된 제방 난간은 통행인의 안전이나 차량의 추락방지에 도움이 되겠으나 규모가 커서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니, 가능한 한 난간의 높이를 낮추고 경관과 조화되어 드러나지 않는 색으로 도색하여 경관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바닥에는 카스토퍼를 설치하여 차량의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난간 높이, 색상, 카스토퍼 설치 등을 보완 조정하고, 정비계획에 따른 주차장 설치 시까지 사용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주차장 설치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되,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설계보완 후 시행

8. 영주 무섬마을 내 제방 호안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문수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내 제방에 호안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내 제방에 호안 설치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안건은 2015년 8월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되었으나, 전통 민속마을의 경관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 후 재심의회하기로 보류되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 (4) 신청내용 : 무섬마을 내 제방 호안공 919m

라.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 / 2015.9.21
 - 무섬마을 하천 제방의 경관, 전체적인 호안정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검토 필요
- 문화재위원 ○○○ / 2015.10.2.
 - 본 안건은 내성천의 재해예방사업으로 연장 919m 제방 구간에 돌붙임, 사석부설, 거적덮기 등의 호안보호공을 계획하고 있음
 - 사업 대상지 제방의 식생이 양호한 상태이나 계획된 공법을 적용할 경우 기존 식생은 모두 제거되어야 함
 - 호안의 직선화가 이루어짐으로 인공성이 강한 호안으로 변화될 것임

- 연중 대부분인 평상시 수위 시 ‘돌붙임’과 폭4m의 ‘사석부설’지역이 시각적으로 강하게 노출될 것임
 - 영주댐의 비상방류 시를 대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나, 이에 대한 빈도, 유량, 유속 등에 대한 수리계산 등 사업의 타당성을 담보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시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함
 - 비상방류 시 유량과 유속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임
 - 호안보호공사가 꼭 필요하다면 경관적,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연형 호안 공법으로 대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문화재전문위원 ○○○ / 2015.10.2.
- 무섬마을을 휘돌아 흐르는 내성천은 무섬마을과 역사문화환경을 같이하는 무섬마을의 주요한 구성요소로서 마을과 함께 보존되어야 할 자연환경임
 - 따라서 무섬마을구간의 내성천 하안도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로 하여 현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담수를 앞두고 있는 영주댐으로 인한 내성천의 수계(水系)와 수량이나 유속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내성천 하안의 보강이 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섬마을구간에서는 가능한 한 현 하안의 선형과 식생에 큰 변화 없이 보강하는 방안이 채택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미흡하며, 무섬마을의 생태·자연환경적 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보류
 - 사업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제출, 무섬마을 생태·자연환경을 고려한 설계 필요

9. 영주 무섬마을 내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문수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내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내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 설치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영주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243-1
- (4) 신청내용 : 무섬마을 내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 설치
 - 키오스크 1대, 거치대 15개 설치(폭 2m, 너비 14m), 부대공사(전기, 통신 등)

라.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 / 2015.9.21
 - 마을입구 주변으로서 설치위치에 대한 재검토 등 위원회 검토 필요
- 문화재위원 ○○○ / 2015.10.2.
 - 공공자전거 대여는 비교적 소규모시설로 시각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설치함으로써 문화재 활용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됨
 - 다만 시설 설치 후 활용도가 낮아 방치된다면 ‘흉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됨
 - 현재 영주시의 공공자전거 대여 시스템 설치계획은 영주시내에 위치한 ‘자전거 공원’과 ‘무섬마을’을 잇는 단일노선이며, 설치장소도 단 2곳에 불과하여 대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의문이 있음

- 이 구간의 거리도 약12km로 비교적 장거리라는 점도 활용성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됨
- 본 안건은 영주시의 자전거 대여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재전문위원 ○○○ / 2015.10.2.
 - 현재 무섬마을 내성천변에 설치하고자 계획되어있는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 시설은 이용객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절기 등에 관리가 부실할 경우 흉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동 시설의 활용계획과 관리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러한 계획 내용에 대한 검토 후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마. 검토의견

- 문화재의 활용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나 위치가 부적절하므로 전통한옥체험관 등 적정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한옥체험관 지역에 마을 경관에 조화롭게 설치

10. 성읍 민속마을 내 캠핑트레일러 설치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내 캠핑트레일러를 설치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내 캠핑트레일러 설치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원
- (3) 신청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588
- (4) 신청내용 : 음료 및 간식 판매를 위한 캠핑트레일러 설치
 - 캠핑트레일러 규격 : 길이 4m, 너비 2.1m, 높이 2m

라. 참고의견(지자체 의견)

- 신청한 캠핑트레일러는 고정 설치되어 영구적인 상업시설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허가 시)향후 유사 신청에 대한 부분 까지 검토가 필요함

마. 검토의견

- 성읍 민속마을 내 상업시설(식품판매용 캠핑트레일러 설치)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마을의 고유한 경관을 저해하여 문화재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마을의 고유한 경관을 저해함

11. 영덕 영양남씨 난고종택 내부와 주변에 LPG배관망 및 저장탱크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영덕군 영해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71호 「영덕 영양남씨 난고종택」 내부 및 주변에 LPG배관망 및 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재 제271호 영덕 영양남씨 난고종택 내부 및 주변에 LPG 배관망 및 저장탱크 설치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구역 내(난고종택 내) 및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 4구역으로 허용기준 상 공통사항(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71호 「영덕 영양남씨 난고종택」
 - 소재지 : 경북 영덕군 영해면 194-2
- (3) 신청위치 : 경북 영주시 영해면 원구리 164 일원
- (4) 신청내용 :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 마을 내 LPG저장탱크 및 가스관로 설치
 - 일체형 소형 LPG 저장탱크(2.45톤) 2기, 개별탱크(0.25톤) 10기 설치
 - 가스관로 1,949m(PE 110mm 1344m, PE 63mm 605m) 설치
 - ※ 난고종택 문화재구역 내에 개별탱크 1기 및 인입관이 설치됨

라.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 ○○○ / 2015.9.18.
 - 난고종택 주사 배면에 설치할 예정인 개별탱크는 바깥마당 화장실 주위 적정 위치에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서 검토함

- 개별탱크는 문화재경관을 고려하여 민속마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은폐 구조시설을 하도록 함
- 안전에 대한 방지 및 관리조치 등의 메뉴얼을 제시하도록 함

마. 검토의견

- 영덕군 원구리마을 일원 도시가스 미공급 주민의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LPG 저장 탱크, 개별탱크 및 배관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 보완한 후 재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안전 및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12. 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47호 「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약 155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원지형 보존지역)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47호 「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
 - 소재지 :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설매리 519번지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설매리 482번지 1호
- (4) 추진경과
 - 2015.6.8 문화재위원회 심의(보류/시도문화재위원회 검토 후 재심의)
 - 2015.8.10 문화재위원회 심의(부결/문화재 경관 저해 우려)
 - 2015.9.23 위치를 변경하여 재신청
 - 기존 단독주택 건물 철거 후 동일 위치에 단독주택 신축
- (5) 신청내용 : 단독주택신축
 - 규모 : 건축면적(연면적) 92㎡, 높이 5.3m(1층)
 - 구조 : 경량철골구조, 칼라강판기와(무광 검정의 한식형태), 드라이비트 매쉬 마감(한식 재사벽 색상)

라. 검토의견

-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건물의 규모나 외형을 감안할 때 문화재경관을 크게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지붕·벽체 색상은 명·채도 가 낮은 색상으로 함

13. 안동 하회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안동 하회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약 1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1구역(원지형보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14-10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신축
 - 규모 : 건축면적 117㎡, 높이 7.35m(1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및 목조, 한식기와지붕, 재사벽설치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5.9.14)

- 신청지는 한옥마을에서 조망되지 않으나 병산서원의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경관에 어울리는 건축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 병산서원은 현재 세계유산 등재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 한옥형태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강변의 경관을 차단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마. 검토의견

- 하회마을로부터는 조망되지 않고 병산서원 허용기준 이내인 점,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이 한옥형태인 점을 감안할 때 문화재 주변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규모와 형태를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병산서원 진입로, 강변 등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14. 안동 하회마을 주변 단독주택 및 소매점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주변 단독주택 및 소매점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안동 하회마을 주변 단독주택 및 소매점 신축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약 1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1구역(원지형보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14-10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및 소매점 신축
 - 규모 : 건축면적 117㎡, 높이 7.35m(1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및 목조, 한식기와지붕, 재사벽설치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5.9.14)

- 신청지는 한옥마을에서 조망되지 않으나 병산서원의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경관에 어울리는 건축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 병산서원은 현재 세계유산 등재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 한옥형태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강변의 경관을 차단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마. 검토의견

- 하회마을로부터는 조망되지 않고 병산서원 허용기준 이내인 점,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이 한옥형태인 점을 감안할 때 문화재 주변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규모와 형태를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병산서원 진입로, 강변 등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15. 안동 하회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안동 하회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약 3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1구역(원지형보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15-11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신축
 - 규모 : 건축면적 84㎡, 높이 5.55m(1층)
 - 구조 : 경량철골구조, 한식기와지붕, 벽돌치장쌓기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5.9.14)

- 신청지는 한옥마을에서 조망되지 않으나 병산서원의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경관에 어울리는 건축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 병산서원은 현재 세계유산 등재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 건물의 외형과 위치 등을 감안하여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마. 검토의견

- 병산서원과 하회마을로부터 상당거리 이격되어 있어 조망되지 않아 문화재 주변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규모와 형태를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규모와 형태 조정후 시행(외형은 전통한옥 형태로 조정)

16. 안동 하회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안동 하회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거리 약 35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1구역(원지형보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65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신축
 - 규모 : 건축면적 89.01㎡, 높이 5.7m(1층)
 - 구조 : 경량철골구조, 황토벽돌, 한식강판기와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5.10.2)

- 기존 마을내의 주택 사이에 건립하는 단독주택으로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하고 벽체는 명채도가 낮은 색상의 벽돌로 함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에 따라 일부 설계수정 및 보완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붕, 벽체등 조정후 시행

17. 영주 무섬마을 주변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주변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주 무섬마을 주변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를 위한 현상변경 신청이 역사 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 거리 약 10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원지형보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영주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영주시 문수면 탄산리 837 일원
- (4) 신청내용 : 도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길이 160m, 폭 4~5m)
 - 토공 : 흙깎기 753.0m³, 흙쌓기 496.0m³
 - 포장 : 아스콘포장 813.0m², 콘크리트포장 345.0m²
 - 배수공 : 배수관 21.0m, L형측구 321.0m, 철근콘크리트수로관 30.0m

라. 검토의견

- 마을에서 강건너에 위치한 도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조망이 어렵고 지상으로 노출되는 시설물이 없는 점, 마을 진입로와 동떨어져 있어 진입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문화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18. 영주 무섬마을 주변 소매점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주변 소매점 신축 부지조성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주 무섬마을 주변 소매점 신축 부지조성 공사를 위한 현상변경 신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거리 약 50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1구역(원지형보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월호리 613번지
- (4) 신청내용 : 소매점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
 - 면적 : 1,113m²
 - 기타공사 : 흙쌓기 2,047.0m³, 순성토 2,047.0m³ 자연석쌓기(H=2.2) L=50.0m

라. 검토의견

- 마을에서 약 500m 가량 이격되어 있고, 야산 등으로 인해 상호조망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문화재 주변경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19. 아산 외암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아산 외암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약 40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2구역(경사지붕 최고높이 7.5m 이하/초가, 한옥, 절충한옥 등에 한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 (3) 신청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306번지 1호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신축
 - 규모 : 건축면적(연면적) 114.84㎡, 높이 6.6m(1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금속기와, 점토벽돌마감

라. 검토의견

- 문화재와 상당거리 이격되어 있고, 지형으로 인해 상호조망이 어려워 문화재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신청지와 약 100m 떨어진 위치에 단독주택 신축을 허용한 사례가 있음
- 다만 외벽과 지붕의 색깔은 명채도가 낮은 색을 사용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벽체 및 지붕을 명채도가 낮은 색으로 조정후 시행

20. 아산 외암마을 주변 지하수 관정 개발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주변 지하수 관정개발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아산 외암마을 주변 지하수 관정개발 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지정구역 인접)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1구역(원지형 보존지역)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 (3) 신청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207번지
- (4) 신청내용 : 지하수 관정개발
 - 착정공사 : 구경 150mm×80m
 - 보호시설 규모 : 1.0m×1.0×0.8m(지상노출은 약 30cm)

라. 검토의견

-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 개발인 점, 지상으로 노출되는 시설물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21. 여주 김영구가옥 주변 주유소 신축 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경기 여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6호 「여주 김영구가옥」 주변 주유소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여주 김영구가옥 주변 주유소신축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 신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4구역(이격거리 약 480m)으로 공통사항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4구역(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 ** 공통사항(공해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축제한 등)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농협협동조합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6호 「여주 김영구가옥」
 -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190번지
- (3) 신청위치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127번지
- (4) 신청내용 : 주유소 신축

	기 준	변 경
1동 (관리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 66.02㎡ ○ 높이 4.2m ○ 철근콘크리트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 147.8㎡ - 관리사무소 70.46㎡ - 세차기 77.34㎡ ○ 높이 5.2m ○ 철근콘크리트구조
2동 (주유소-캐노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 160㎡ ○ 높이 7.2m ○ 일반철골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 253.55㎡ ○ 높이 7.2m ○ 일반철골조

라. 검토의견

- 2013.10월 기 허가한 사항으로서 중간에 야산이 위치하여 상호조망이 안됨
- 문화재에서 멀리 이격되어 있어 해당 시설물의 화재 등으로부터 문화재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22. 화성 정용채가옥 주변 공장증축

가. 제안사항

경기 화성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4호 「화성 정용채가옥」 주변 공장증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정용채가옥 주변 공장증축 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약 15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원지형 보존지역)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건설(주)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4호 「화성 정용채가옥」
 - 소재지 : 경기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09번지
- (3) 신청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311번지 11호
- (4) 신청내용 : 공장증축(기존공장 : 건축면적 1,890㎡, 높이 12.2m)
 - 규모 : 증축면적 404㎡, 높이 12m
 - 구조 : 철골구조

라. 검토의견

- 기존에 위치한 공장건물을 증축하는 사항으로 문화재와 사업부지 사이에 위치한 야산으로 인해 상호조망이 되지 않아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23. 대구 둔산동 경주최씨종택 주변 수목정비

가. 제안사항

대구 동구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61호 「대구 둔산동 경주최씨종택」 주변 수목정비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아산 외암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약 25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보존지역)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구광역시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61호 「대구 둔산동 경주최씨종택」
 - 소재지 : 대구 동구 옷골로 195-5
- (3) 신청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산33번지
- (4) 신청내용 : 수목정비
 - 정비면적 : 1ha
 - 정비내용 : 방치된 유실수 제거 후 전통수목 식재

라. 검토의견

- 유실수를 제거하고 전통수종으로 식재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경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24. 제원 박도수가옥 주변 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

가. 제안사항

충북 제천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37호 「제원 박도수가옥」 주변 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원 박도수가옥 주변 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 신청이 역사 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2구역(이격 거리 약 5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2구역(평지붕은 신축불가, 경사지붕은 주거 및 농업용 참고에 한해 7.5m이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충청북도 제천 교육지원청교육장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37호 「제원 박도수가옥」
 - 소재지 : 충북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305번지
- (3) 신청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294번지
- (4) 신청내용 : 다목적 교실 신축
 - 규모 : 건축면적 827.13㎡, 높이 12.8m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금속), 점토벽돌 치장쌓기

라. 검토의견

- 기존에 위치한 학교 내에 신축하는 건축물이기는 하나 그 규모가 커 위치 조정 등 현지조사 후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25. 제원 박도수가옥 주변 축사 신축

가. 제안사항

충북 제천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37호 「제원 박도수가옥」 주변 축사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원 박도수가옥 주변 축사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 신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약 33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허용기준 : 1구역(원지형보존지역)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37호 「제원 박도수가옥」
 - 소재지 : 충북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305번지
- (3) 신청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248번지
- (4) 신청내용 : 축사신축
 - 규모 : 건축면적 427.5㎡, 높이 6m
 - 구조 : 일반철골구조

라. 검토의견

- 문화재 배면의 산 너머에 위치하여 조망은 되지 않으나 축사의 악취가 문화재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현지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26. 보은 선병국가옥 주변 군부대 내 식당신축

가. 제안사항

충북 보은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34호 「보은 선병국가옥」 주변 군부대 내 식당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은 선병국가옥 주변 군부대 내 식당신축 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약 9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원지형 보존지역)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34호 「보은 선병국가옥」
 - 소재지 : 충북 보은군 장안면 개안길 10-2
- (3) 신청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166번지
- (4) 신청내용 : 군부대 내 식당신축
 - 규모 : 연면적 411.3㎡, 높이 5.7m(1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점토벽돌, 스페니시 기와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5.9.23)

- 군부대내에 위치하고 있고 문화재와 기존 건물 및 농업시설물로 시야가 차단되어 있어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높이 8m로 신청되었으나 상층부를 제거하기로 하여 크게 영향 없음

마. 검토의견

- 기존 군부대 내에 병영식당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문화재와 상호조망이 어려워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가결

27. 홍성 엄찬고택 주변 버섯재배사 신축

가. 제안사항

충남 홍성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31호 「홍성 엄찬고택」 주변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홍성 엄찬고택 주변 버섯재배사 신축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거리 약 8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원지형 보존지역)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31호 「홍성 엄찬고택」
 - 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 29
- (3) 신청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 산6-1
- (4) 신청경과
 - 2015.8월 소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문화재 배면의 양호한 자연수림경관 저해)
 - 2015.10월 재신청(동일위치에 규모를 계획변경하여 재신청)
- (5) 신청내용 : 버섯재배사 1동 신축(비닐하우스)
 - 규모 : 면적 5m×10m, 높이 2m
 - 절성토 없이 비닐하우스만 설치

라. 검토의견

- 문화재 배면의 수목을 일부벌채하고 절성토하는 계획을 취소하고 비닐하우스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
- 신청인은 잡목 한그루만 제거하고 최소한의 공간에 설치하겠다는 의견으로 현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28. 송소고택 주변 옹벽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청송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50호 「송소고택」 주변 옹벽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송소고택 주변 옹벽설치 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거리 약 9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1구역(원지형 보존지역)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청송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50호 「송소고택」
 - 소재지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15-2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738번지
- (4) 신청내용 : 옹벽설치
 - 규모 : 길이 25m, 높이 1.7~2.3m
 -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L형 옹벽 설치 후 석축(야면석) 설치

라. 검토의견

- 이미 설치되어 있는 옹벽을 연장하는 사업이고 설계 역시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존 옹벽과 유사한 색깔과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이질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29. 의성김씨 서지재사 주변 도로선형 개량 공사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2호 「의성김씨 서지재사」 주변 도로선형 개량공사를 위해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의성김씨 서지재사 주변 도로선형 개량공사를 위한 현상변경 신청이 역사 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 3구역 (이격거리 약 12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원지형보존), 3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82호 「의성김씨 서지재사」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가수내길 8-12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310번지 일원
- (4) 신청경과
 - 2015.8.10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보류(차폐 및 경관식재 설계보완 후 재심의)
 - 2015.9.4 보완설계 접수(이팝나무 108주 식재 설계도서 접수)
- (5) 신청내용 : 도로선형 개량공사(L=1.16km, B=19.5m)
 - 토 공 : 흙깎기 : 98,620m³, 흙쌓기 : 38,070m³
 - 배수공 : 배수관부설 640m, 수로암거 217m, L형측구 1,470m, L형 옹벽 식측구 550m, V형측구 498m, U형개거 130m
 - 교량공 : 서지천1교 L=33.0m(B=20.5m), 서지천2교 L=30.0m(B=9.0m)
 - 구조물공 : 역T형옹벽:83m, 식생호안블럭:222m
 - 포장공 : 아스팔트포장:28,440m²
 - 경관식재 : 이팝나무(높이 1.5m~2m) 108주 식재

라. 검토의견

- 경관식재 설계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가로수 수고를 2m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함

30. 가일수곡고택 및 안동 권성백고택 주변현상변경 허용기준 개정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76호 「가일수곡고택」, 제202호 「안동 권성백 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개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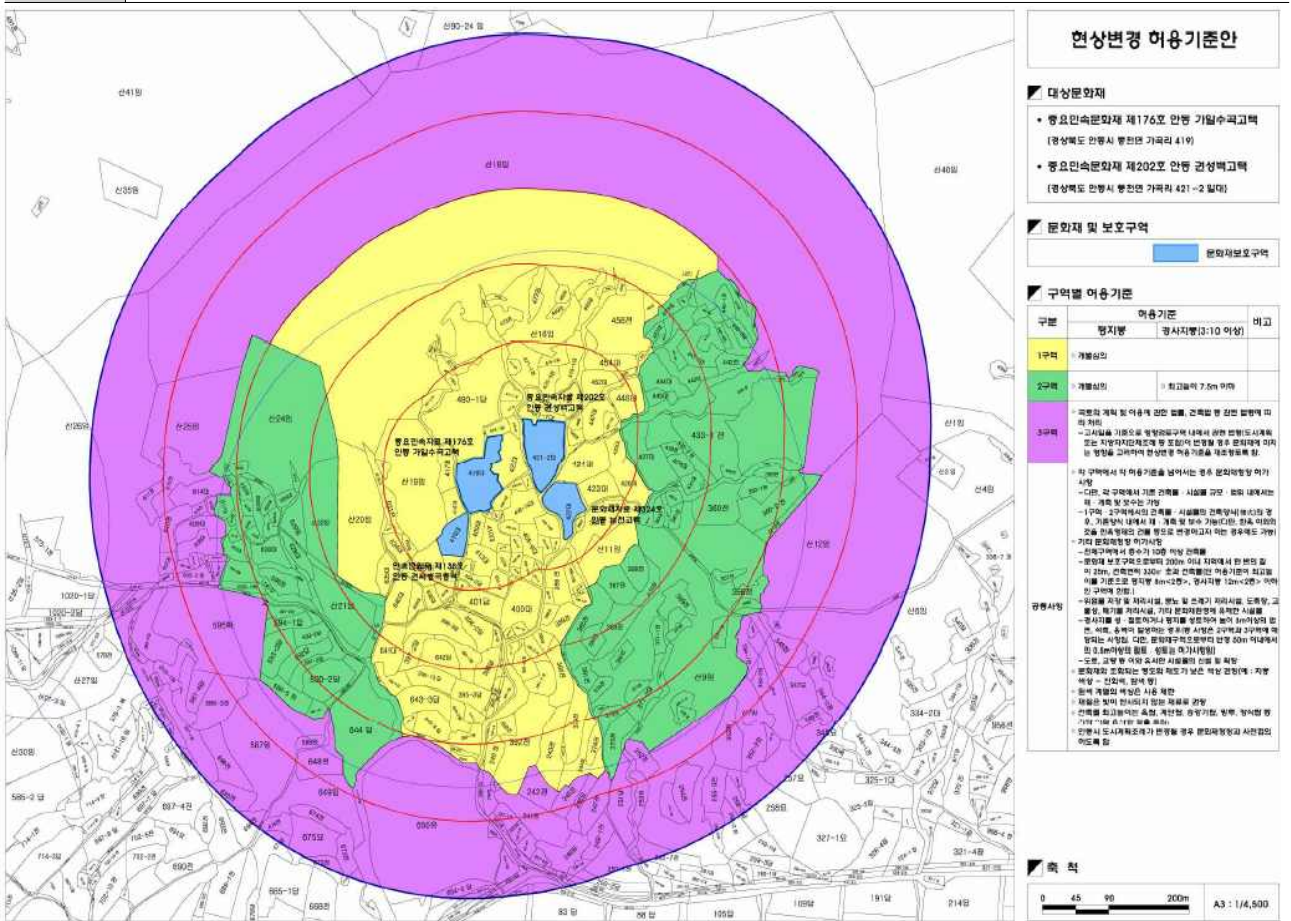
- 동 건물은 「가일수곡고택」 및 「안동 권성백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준(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안동시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76호 「가일수곡고택」
 - 중요민속문화재 제202호 「안동 권성백 고택」
- (3) 신청내용 :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개정(안) 마련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개별심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는 가능 - 1구역·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축물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동 사항은 2구역과 3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진회색, 밤색 등) ○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로 권장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가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함		



라. 주민의견 청취결과

- 공고기간 : 2015.07.21. ~ 2015.08.09.(20일간/ 안동시 공고 제2015-1088호)
- 공고결과 : 주민의견 없음

마. 검토의견

- 지난 2014.12월 문화재 진입로 경관보호를 위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된 사항임
- 개정안은 문화재 진입로를 1구역을 조정하여 문화재 전면 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음
- 그 외 2, 3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역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자구수정 실시(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이 아닌 지정구역으로 표시)

바. 의결사항

- 가결

31. 안동 학암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개정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79호 「안동 학암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개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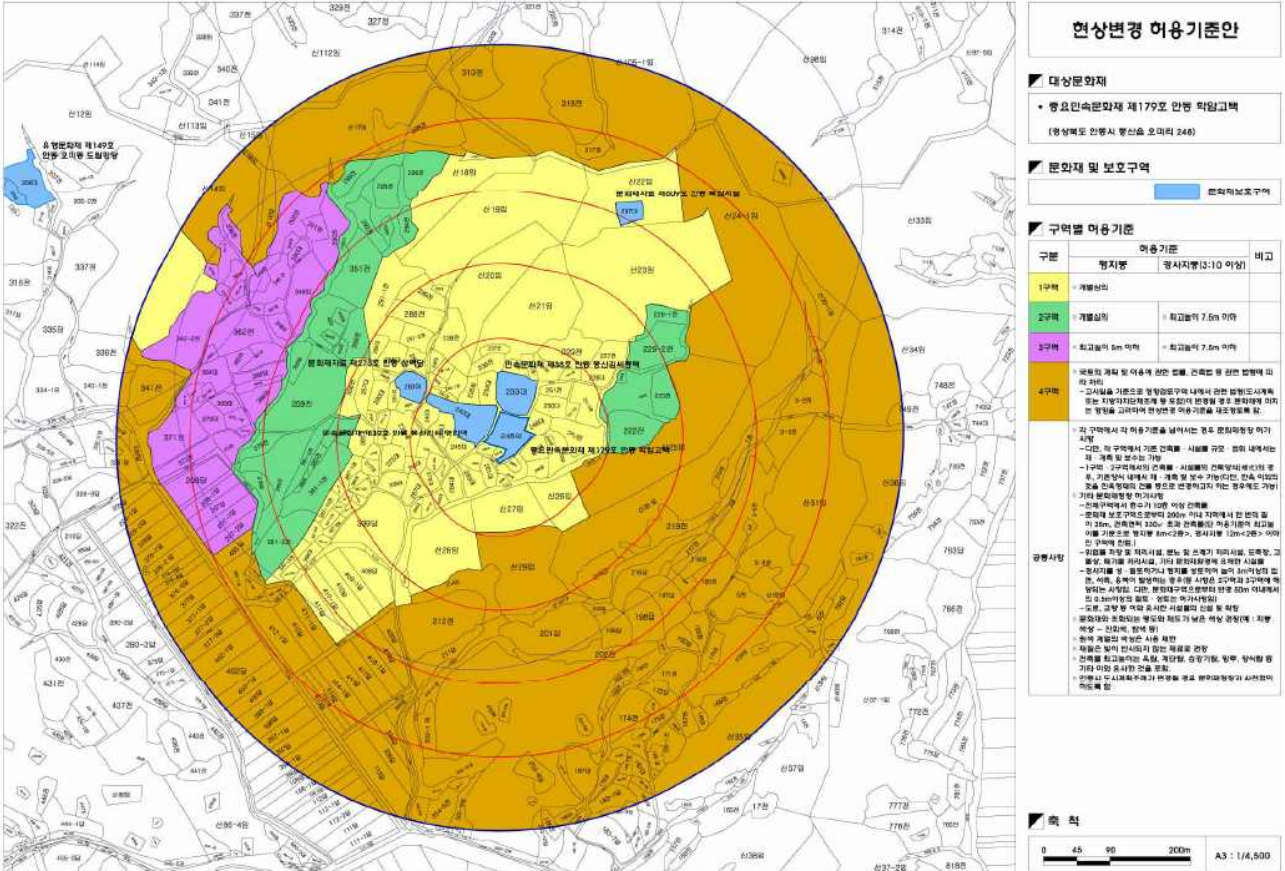
- 동 건은 「안동 학암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준(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안동시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79호 「안동 학암고택」
- (3) 신청내용 :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개정(안) 마련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개별심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는 가능 - 1구역, 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축물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동 사항은 2구역과 3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진회색, 밤색 등)		

-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로 권장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가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함



라. 주민의견 청취결과

- 공고기간 : 2015.07.21. ~ 2015.08.09.(20일간/ 안동시 공고 제2015-1088호)
- 공고결과 : 주민의견 없음

마. 검토의견

- 지난 2014.12월 문화재 진입로 경관보호를 위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된 사항임
- 개정안은 문화재 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야산의 능선, 기존 주변가옥 등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였음
- 기타 자구수정 실시(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이 아닌 지정구역으로 표시)

바. 의결사항

- 가결

검 토 사 항

32.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 개정

가. 제안사항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 개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의 문화재가치를 보존하면서 거주자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 고시된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근대문화재과장)
- (2) 주요내용 :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에 ‘처마 빗물받이 및 물흙통’에 대한 설치기준 추가

<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현황 >

- 최초고시 : 2011. 11. 03.(제2011-154호)
 - ※ 개정고시 : 2013. 09. 02.(제2013-89호), 2014. 11. 03(제2014-113호)
- 적용범위
 - 생활기본시설 :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냉·난방 시설(창호 포함)
- 적용방법
 - 동 기준 범위내 현상변경허가사항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
 - 관계전문가로부터 보존영향 검토자문을 통해 허가여부 결정
- 주요내용
 -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위치에 처마선 이내 공간까지 증축 가능
 - 칸막이 제거를 통해 방과 방 통합 가능
 - 부엌 아궁이는 원형을 유지하되 싱크대는 설치 가능
 - 본채 및 부속채 내에 욕실, 화장실 설치 가능
 - 가옥 내 노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이동 편의 보조시설 설치 가능

(3)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15. 9. 11. : 관계전문가 검토(○○○, ○○○ 위원, ○○○ 전위원)
- '15. 9. 14 ~ 10. 2 : 지자체, 소유자 의견 수렴

- '15. 10. 12 : 문화재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 심의
- '15. 11~12월 : 규제심사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개정 고시 예정

라. 관계전문가 검토의견

- 지붕의 처마 내밀기가 짧아서 낙숫물이 기단 내로 떨어지는 경우에 기둥, 벽체 등이 훼손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에 다음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 지붕의 처마 내밀기가 짧아 낙숫물이 기단 내로 떨어져서 기둥, 벽체 등이 훼손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관계전문가(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정비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붕과 어울리는 재질과 색상으로 처마 빗물받이 및 물홈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의결사항

- 가결

붙임 :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개정(안) 1부.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전통 고택 지붕의 처마 내밀기가 짧아서 낙숫물이 기단 내로 떨어지는 경우에 기둥, 벽체 등이 훼손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빗물받이 및 물ஹ통 설치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처마 빗물받이 및 물ஹ통 설치기준 추가(안 세부 기본시설 설치기준 개정)
 - 전통 고택 지붕의 처마 내밀기가 짧아서 낙숫물이 기단 내로 떨어지는 경우에 기둥, 벽체 등이 훼손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정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붕과 어울리는 재질과 색상으로 처마 빗물받이 및 물ஹ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세부 기본시설 설치기준에 사. 처마 빗물받이 및 물흙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처마 빗물받이 및 물흙통

- 지붕의 처마 내밀기가 짧아 낙숫물이 기단 내로 떨어져서 기둥, 벽체 등이 훼손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관계전문가(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정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붕과 어울리는 재질과 색상으로 처마 빗물받이 및 물흙통을 설치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 세부 기본시설 설치기준 가.~바. 생략 <u><신 설></u>	5. 세부 기본시설 설치기준 가.~바. 현행과 같음 <u>사. 처마 빗물받이 및 물흙통</u> ○ 지붕의 처마 내밀기가 짧아 낙숫물이 기단 내로 떨어져서 기둥, 벽체 등이 훼손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관계전문가(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정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붕과 어울리는 재질과 색상으로 처마 빗물받이 및 물흙통을 설치할 수 있다.

붙임 :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개정안 1부.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개정

문화재청 고시 제2011-154호(2011.11.03. 최초고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3-089호(2013.09.02. 일부개정)
문화재청 고시 제2014-113호(2014.11.03. 일부개정)
문화재청 고시 제2015- 호(2015. . . 일부개정)

1. 적용범위

가. 생활기본시설 :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냉·난방 시설(창호 포함) 등

2. 적용방법

가. 동 설치기준 범위 내 설치·시공에 관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사항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근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2조제3호

- 시·도지사는 시·도 사무위임 조례(규칙) 개정 등을 통해 관할 시장·군수 등에 허가사항의 재위임을 검토할 수 있다.

나. 시·도지사는 민원인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신청이 접수될 경우,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관계전문가에게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여부에 대한 검토자문을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다. 시·도지사는 현상변경 허가할 경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허가사항을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3. 비용부담

가. 설치비용은 소유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 고증 등을 통한 원형복원 등 문화재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4. 구분별 기본원칙

가. 일반원칙

- 문화재로 지정된 고유한 특성(구조·기둥·보 등의 특수한 기법·양식) 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은 원형대로 보존한다.
- 현재의 경관구도를 최대한 유지하되, 주거시설과 부속시설, 주변(담장·마당·뒷뜰 등)의 변형된 경관은 원형을 고증하여 회복하도록 한다.
-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안)의 적용으로 인해 획일화되지 않고, 지역 고유한 전통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시공전후 관련자료(사진, 도면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문화재청에 보고한다.

나. 공간의 변경

- 단순히 방의 크기를 확장하기 위해 외부로 벽을 달아내는 증축행위는 금지하며, 내부의 방을 하나로 합쳐 큰 방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공간의 변형 시 가옥 고유의 공간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고,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마선 이내 공간을 활용하거나 현대식 생활양식에 맞는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건축 구조

- 주요 구조부는 전통 구조수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건축물의 내부구조는 원형의 훼손이 없는 선에서 기능과 용도에 따라 현대 생활에 맞게 변형할 수 있다.
- 전통 구들 구조는 원형보존하고 상부에 온수보일러 및 전기판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열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건축 재료

- 외부로 노출되는 재료는 전통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창호의 경우 현대식 재료(샷시, 단열재료 등)는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목재 창호 안쪽에 사용한다.
- 현대적 재료의 도입 시에는 불연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외부에 설치되는 수납함 등은 은폐를 위해 최소한의 크기로 제작,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주택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마. 건축 설비

- 전통적인 모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대식 시설을 허용할 수 있다.
- 외부 노출시설은 나무·발 등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차폐토록 한다.
- 건물 내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외관에 변형을 주지 않도록 하되, 정화조의 배수구는 공동 오수처리관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5. 세부 기본시설 설치기준

가. 방 및 공간

- 전체적인 평면은 원칙적으로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
- 내부공간 활용을 위한 방 면적 변형 시에는 가옥 고유의 전통적 공간을 훼손(방·대청 통합, 개방공간의 차폐 등)해서는 안되며, 칸막이 벽 제거 시 구조적으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거할 수 있으나, 원형의 가구(架構)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보존해야 한다.

나. 부 역

- 가옥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아궁이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원칙적으로 원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 생활을 위해 부덕이 부역 바닥을 높이는 경우에는 아궁이에 불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공토록 한다.
- 입식 조리를 위한 설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설치하는 가구는 가옥과 어울리는 형태와 색상을 선택한다.

다. 화장실 및 욕실

- 본채 외형 및 평면의 변형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채 내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화장실 내부는 현대식 설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습기로 인해 목부재의 부후를 방지하기 위한 환기를 고려해야 한다.
- 평면 변형이 없는 한도 내에서 창고 등 부속채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내부공간에 탈부착이 가능한 샤워부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냉·난방 시설

- 난방시설은 전통 구들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 보일러실·에어컨 실외기 등은 가능한 실내에 두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 외부로 노출된 에어컨 실외기 등의 냉방기기·가스통 등은 나무·대나무·밭 등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가리개 또는 보관함을 만들어 전통가옥 경관에 어울리도록 한다.
- 외부에 설치할 경우 단독 건물로 하지 말고 필요한 부속공간을 합쳐 한 건물에 들어가도록 한다.(예 : 창고+화장실+보일러실)
- 연료탱크는 가능한 한 외부로 노출시키지 말고 본채와 유사한 재료 등을 사용하여 외부를 가리도록 한다.

마. 창 호

- 외부로 노출되는 창은 전통적인 형태와 재료를 사용하되 건축물의 기능과 용도, 규모에 맞도록 설치한다.
- 기존의 전통창호는 변형할 수 없으며 안쪽에 이중창을 설치할 때는 목재와 유사한 색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야 한다.
- 환기·단열 등을 위한 창호 설치 시 외부는 전통형태를 유지하고, 내부에 현대창호를 활용토록 한다.
- 기존 벽체 인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부에 창호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바. 이동 편의 보조시설

- 가옥 내 노약자 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경사로, 난간, 손잡이 등 보조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단, 한옥과 어울리고 철거가 가능한 재료로 설치한다.

사. 빗물받이 및 물흙통

- 지붕의 처마 내밀기가 짧아 낙숫물이 기단 내로 떨어져서 기둥, 벽체 등이 훼손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관계전문가(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정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붕과 어울리는 재질과 색상으로 처마 빗물받이 및 물흙통을 설치할 수 있다.

6. 재검토기한

-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7. 시행일

- 가.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33. 지역 거점 문화재 활용 활성화 방안 및 향후 계획(안)

가. 제안사항

전국에 소재한 문화재 중 지역 거점 문화재 활용 대상으로 관아·향교·서원·종가 문화재의 문화재 활용 활성화 방안 및 향후 계획(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지역 거점 문화재로서의 관아·향교·서원·종가 문화재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향후 계획(안)을 검토 받기 위해 부의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
 - 관아·향교·서원·종가 문화재<국가지정 및 시·도지정 문화재>
- 소재지 : 전국
- (3) 신청내용 : <지역 거점 문화재 활용 활성화 기본계획(안) 검토>
 - 운영기간 : 2016년~계속
 - ※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운영현황 : 생생문화재('08년~), 향교·서원 활용사업('14년~)
 - 사업내용
 - 고품격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개발
 - 심층형·몰입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반환경 조성
 - 사업추진방법
 - 문화재청 : 지방자치단체(각 시·도)에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지침 시달, 국가지정 설계승인 등
 - 지방자치단체 :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지도관리, 시도지정 설계승인(시·도) 등

라. 검토의견

- 정부예산 확보시 각 지자체별로 해당사업을 신청받아 타당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는 문화재청의 해당문화재분과위원회심의, 시·도지정문화재인 경우는 해당 시·도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행할 예정으로서 기본계획(안)은 타당함

마. 의결사항

- 가결

별첨 : 지역 거점 문화재 활용 활성화 기본계획(안) 1부. 끝.

지역 거점 문화재 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안)

□ 추진 배경

- 고품격·고품질의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사회적 요구 확산
- 문화유산 융·복합 활용으로 「지역문화 브랜딩」 계기 마련
- 문화재의 시대정신 전승 장소로서의 명소화 구현
-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문화융성) 및 국정과제 성과목표 달성
- ※ 국정과제 113-1 : 향교·서원 문화재 관광자원화

□ 활용사업 기본방향

[기본 방향]

-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

- 「문화재 활용이 문화재 보존의 근본」이라는 가치 정립
- 문화재 가치의 재발견 및 현대적 계승
- 문화재를 지역문화 거점으로서 육성
- 자립적·지속적·체계적 활용 체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 추진경과

-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운영(2008~현재)

(단위 : 건, 억원)

사업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계
생생 문화재	지원수	4	8	20	29	30	45	70	105	311
	지원액	1	2	5	8.5	8.5	12	18.3	20.7	76
향교·서원 문화재	지원수	-	-	-	-	-	-	38	71	109
	지원액	-	-	-	-	-	-	12	21.2	33.2

- 문화재 환경기반 조성 연구
 -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재생 기본계획 연구('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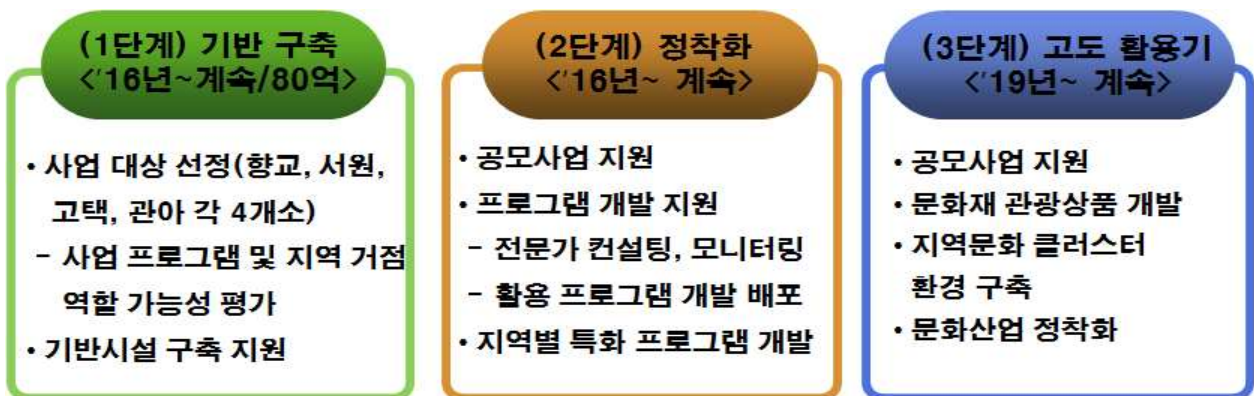
-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환경기반 조성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13년)
- 서원 생활기물 조사 연구('14년)
-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향교·서원 활용 운영모델 제시 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13년)
 - 서원 르네상스 조성방안 연구('14년)
 - 관아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15년)
 - 문화유산 이야기자원(620선), 여행길 발굴(75선) 및 프로그램 개발
 - ※ 문화유산 이야기자원 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15년)

□ 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

[추진 방향]

- 고품격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개발
- 전통 생활모습 구현으로 문화재 명소화, 명품화 실현
- 심층형·몰입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 ※ 문화재 원형보존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현상변경 최소화

○ 단계별 추진계획



○ 2016년도 사업 추진계획(안) * 예산미확보

- 생활기물 비치 : 20억(5억 * 4개 권역)
- 체류형 문화재 환경조성 : 24억(1.5억 * 16개소)
- 활용 프로그램 개발 보급 : 28억(디지털화, 흥익인간, 충효, 화랑정신)
- 전통문화 육성 진흥 시범사업 : 8억(0.5억 * 16개소)

<분야별 세부내역>

- 문화재 내부공간의 당시 모습 구현으로 문화유산 명품화 실현(20억)
 - (전통) 생활기물 비치 : 권역별 5억 지원(유형별 평균 125백만원)
 - ※ 생활기물, 제향기구, 행정기물 구비·전시·활용
 - 문화재 주변 환경 기반시설 조성으로 문화재 품격 제고(24억)
 - 숙박체험 시설기반 구축 및 문화재 환경정비 : 150백만원 × 16개소
 - ※ 냉·난방시설, 화장실 신·개축, 주방시설 및 전기배선 등 환경정비
 - 고품격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개발(28억)
 - 인터랙티브(interactive) 디지털 영정 시스템 개발 및 앱 개발(24억/4개소)
 - ※ 3D 홀로그램을 통한 선현들과의 만남을 재현하고, 관람객과 상호 교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개발(지역배출 역사적 인물, 서원 배향인물 등을 중심)
 - 고품격 문화향유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앱 개발(4억/4식)
 - ※ 지역의 특색을 부각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역사적 사건, 인물, 고유문화 등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사상(홍익인간, 화랑정신, 충효정신 등)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지역별·주제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예시)】**

 - ▶ 모범적 인재상 : 조선시대 인재양성 최고학부(성균관)
 - ▶ 절의·충효 정신 : 매천 황현 강학 공간(구례향교)
 - ▶ 화랑정신 : 김유신, 최치원, 설총 배향 서원(서악서원)
 - ▶ 청렴·선비 정신 : 고봉 기대승, 퇴계 이황 정신수양 공간(월봉서원, 도산서원)
- 전통문화 진흥·육성 시범사업 운영(8억/16개소)
 - ※ 4개 권역의 거점으로서 대표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를 선정(역사적 스토리 풍부성, 프로그램 콘텐츠, 문화 클러스터로서의 잠재성 등으로 평가)

□ 사업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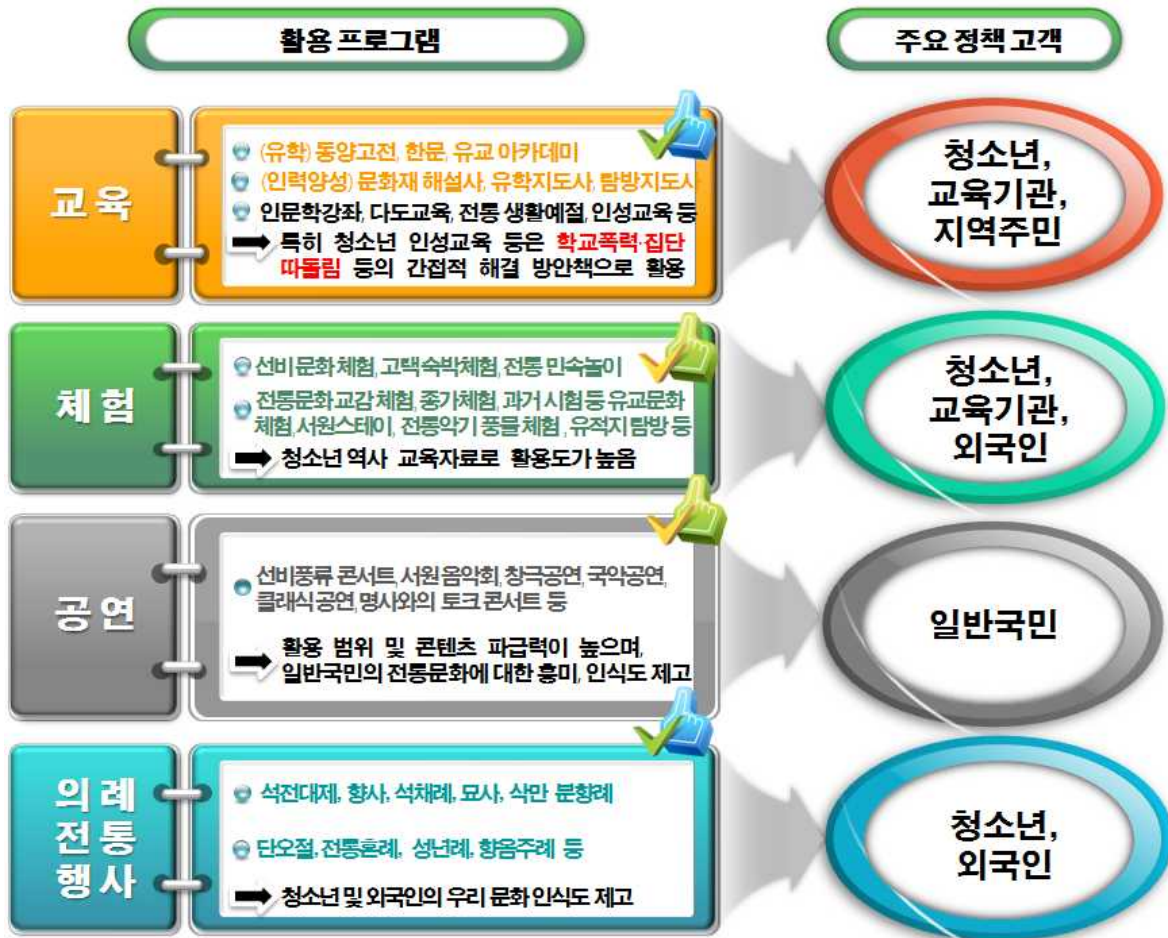
-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다각화로 과거와 현대의 소통의 공간으로 재탄생
- 교육·관광·문화산업의 유기적 가치사슬 활성화로 문화유산 가치 활용 산업화
-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기반 환경 조성으로 문화유산의 명품화 실현

참고 1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현황

□ 사업개요

사업명	생생문화재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추진방식	지방자치단체 공모 보조사업 (공모 6~8월/심사 9월/통보 10월)		
사업기간	2008년~계속	2014년~계속	
사업규모	17개 시·도 104개소 운영 (20.7억 국고보조금 교부)	17개 시·도 71개소 운영 (21.2억 국고보조금 교부)	
보조율	국비 40%(지방비 60%)	국비 50%(지방비 50%)	
사업유형	시범육성형(1년차)	집중육성형(2~4년차)	지속발전형(5년차~)
지원규모(상한액)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주요 활용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국악체험>



<외국인 다도체험>



<판소리 공연>



<국궁 체험>



<선비 체험>



<국악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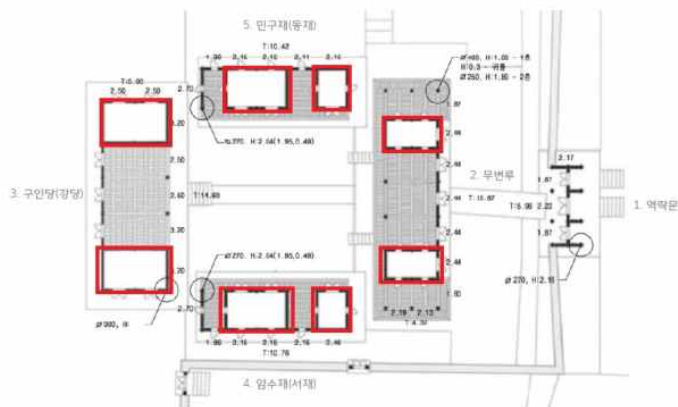
<옥산서원 전경>

• 옥산서원 내부 구조



<옥산서원 내부구조> ※ 문화재 활용공간

• 옥산서원 현장 실측 참고도



<옥산서원 현장 실측도> ※ 숙박체험 기반환경 조성

보고 사항

34. 문화재위원회 민속분과 제1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민속분과 제1차 소위원회 처리안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소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5.8.28(금) 14:00~16:00
- 장 소 : 함양군청
- 참석위원 : ○○○, ○○○, ○○○
- 회의안건 : 중요민속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 심의 3건
- 회의결과 : 조건부가결 1건, 부결 1건, 보류 1건

다. 처리내용

건 명	내 용	결 과
1.무안 유교리 고가 주변 대나무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신청위치 : 1구역(지정구역 인접) ○ 신청내용 : 대나무 제거(210㎡) 후 잔디 식재 ○ 심의의견 : 현지조사 후 조사자 의견에 따라 처리 	보류
2.홍성 엄찬고택 주변 버섯재배사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신청위치 : 1구역(이격거리 약 80m/원지형보존지역) ○ 신청내용 :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신축 ○ 심의의견 : 문화재 배후의 양호한 자연수립 경관을 저해함 	부결
3.함양 일두고택 주변 경관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함양군수 ○ 신청위치 : 1~5구역(전 구역에 걸쳐서 시행) ○ 신청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정비 : 22가구, 620m(토석담장 424m, 돌담 196m) - 지붕정비 : 함석기와 25가구, 한식기와 1가구 - 기 타 : 노후가옥 철거 후 소공원 및 마을안길 조성 ○ 심의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체는 한식금속기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한식 플라스틱 기와도 고려할 수 있음 - 부속채는 진회색 무광의 금속(함석)기와로 함 - 소공원 명칭은 쉼터 또는 휴게소 등으로 변경 - 식재할 나무는 현재 마을에 분포하고 있는 토종수종으로 변경하여 전문가 자문 받고 식재 - 철거예정가옥 주변에 설치예정인 토석담장은 기존 돌담장과 맞춰 변경하고, 기존 돌담은 최대한 유지 	조건부가결

건 명	내 용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거하면서 나오는 자연석은 최대한 활용하여 쉼터 조성 - 토석담장 정비는 원칙적으로 긍정적. 단지 담장(본래형태)은 원형에 충실하게 정비하고, 본래 없었던 담장은 주변 담장과 조화되는 양식으로 권장하고 생 울타리도 검토 필요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